

해양수산부

통보

제 목 근해어업 행정처분 감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내 용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처분규칙”이라 한다) 제4조 관련 [별표]의 규정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위반에 대해 위반행위별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별표] I. 제6호에서는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음 각 목¹²⁶⁾의 범위 안에서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산업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 근해어업의 휴업신고,

126) 어업허가 등 행정처분 감경 기준

- 어업정지, 어획물운반업정지 또는 해기사면허정지 요구의 대상인 경우: 행정처분등 기준일수의 2분의 1
-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취소 또는 해기사면허취소 요구의 대상인 경우: 90일 이상의 어업정지, 어획물운반업정지 또는 해기사면허정지 요구

근해어업의 제한·정지, 근해어업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근해어업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근해어업을 받은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포상, 표창 등으로 【표 1】과 같이 행정처분을 감경하여 처분하였다.

【표 1】 근해어업 행정처분 감경 현황

구 분	계	2014	2015	2016
감경처분(건)	14	6	3	5

한편 부산해양○○○○서는 2016. 6. 25.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제○○○○호(○○톤, (주)○○○○)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인 경상남도에 '16. 8. 29.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나, 경상남도는 동 어선이 선적항 변경(경상남도 ○○시 → 부산광역시 서구)으로 부산광역시장으로 허가권자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여 2016. 8. 30.에 부산광역시에 행정처분 의뢰 공문을 이송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행정처분규칙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¹²⁷⁾는 이유로 【표 2】와 같이 동 어선의 선주인 (주)○○○○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2016. 6. 25. 이후인 2016. 8. 20.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표창¹²⁸⁾을 근거로 어업정지 30일을 15일로 감경하여 처분하였다.

127) 감사기간 중 확인결과, ○○○○부(○○○○과)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이전에 받은 포상 등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

128) '16. 8. 5. 표창 상신, '16. 8. 20. 표창장 전수

【표 2】 제○○○○○호 행정처분 내역

어선명	위반내역 (위반일)	행정처분 기준	감경 근거	행정처분 (처분일)	비 고
제○○○○○호 (○○톤)	수산업법 제61조제1항 조업구역위반 (‘16. 6. 25.)	30일 정지	서구청장 표창장(‘16. 8. 20.)	15일 정지 (‘16. 9. 2.)	1/2 감경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통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해 위반일 이전에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받은 포상 등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